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77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저출생 · 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14.

다. 회 부 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제출(예산서 작성·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 제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176호)¹⁾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별도의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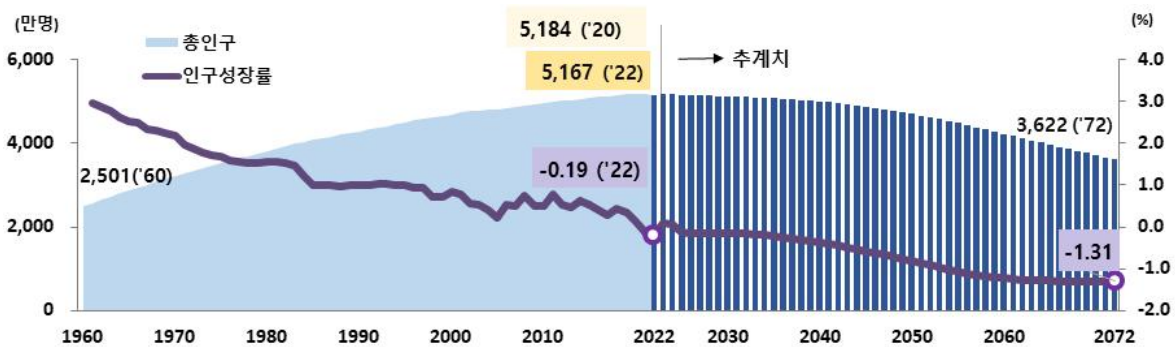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의 원칙에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관련 사항 규정 -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저출생·고령화인지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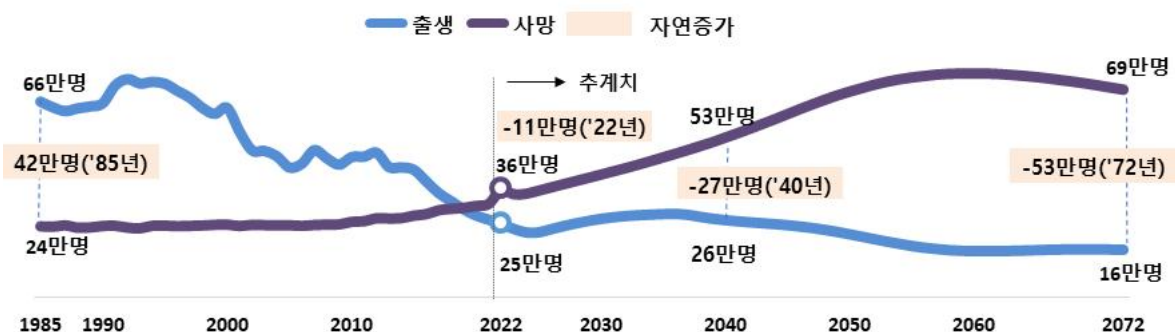
저출생·고령화인지예·결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5~2072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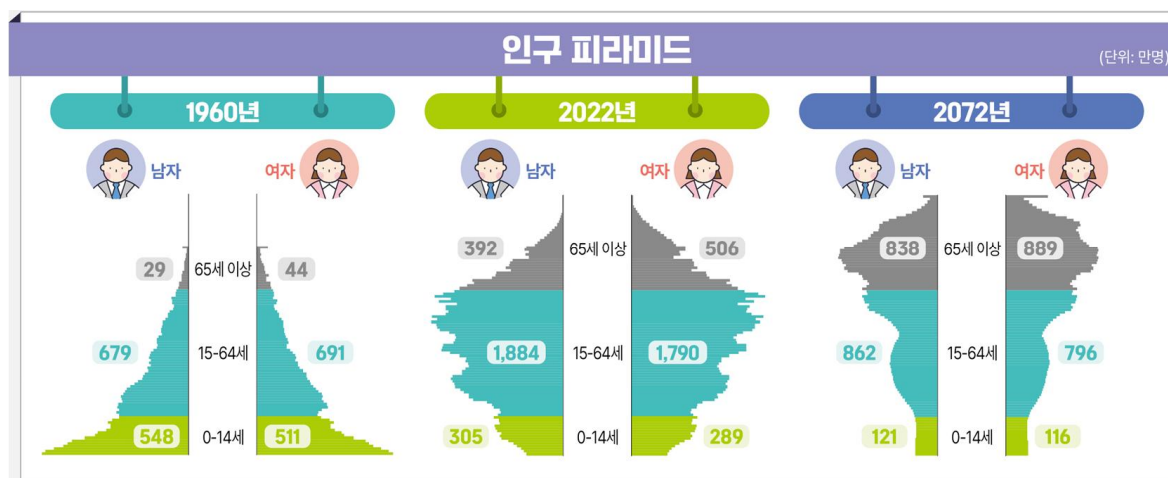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은 2024년(잠정) 0.75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2)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수

낮은 수준이며,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72년에는 3,622만명(1977년 수준)으로 감소하며, 출생아 수는 2022년 현재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2022년의 6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³⁾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현재 3,674만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현재 898만명에서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여, 인구피라미드가 2022년 기준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에서 2072년에는 60세 이상이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⁴⁾

[인구 피라미드(1960~2072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3) 인구변동요인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이다.

* 고위 추계 시 2072년 총인구 4,282만명, 출생아수 26만명 수준 전망

* 저위 추계 시 2072년 총인구 3,017만명, 출생아수 9만명 수준 전망

4) 인구변동요인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이다.

* 고위 추계 시 2072년 생산연령인구 2,007만명, 고령인구 1,905만명 수준 전망

* 저위 추계 시 2072년 생산연령인구 1,334만명, 고령인구 1,543만명 수준 전망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교육·안보 등의 각 분야에서 산업별 인력수급 부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인프라 붕괴, 상비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우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입규모 감소와 지출수요의 증대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⁶⁾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삭제 <2008. 2. 29.>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계획과 함께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서를 연계할 경우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재정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이 필요함. 그러나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분류 기준 및 각 사업별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 기준 및 지표 등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저출생·고령화 관련 분류 및 분석 기준·지표 등을 기반으로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효과적인 재정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임.⁷⁾

7) 기획재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저출생·고령화는 다문화·주거·일자리·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적정 범위의 설정이 곤란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예산사전심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구 관련 제도의 도입을 지켜본 후 이들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를 토대로 저출생·고령화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호)」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하 “저출생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 및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 12. (생략)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u>기금결산서의</u>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u>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u> <u>서</u>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같은 항 제7호</u> <u>의3에 따른 저출생·고령화인지 결</u> <u>산서, 제2항제2호에</u> ----- <u>기금결산서, 같은 항</u> ----- ----- <u>기금결산서 및 같은</u> <u>항 제2호의3에 따른 저출생·고령화</u> <u>인지 기금결산서의</u> ----- -----.

문 의 처
02)6788-5153